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서삼석 · 이학영

김 윤 · 송옥주 · 조계원

문금주 · 권칠승 · 이재관

임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·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 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·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·선식으로 제공되는 농

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).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”를 “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 또는 항공기·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배달”을 “배달 또는 기내식(機內食)·선식(船食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원산지 표시) ①·② (생략)	제5조(원산지 표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(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	③ -----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 또는 항공기·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2조의2 또는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,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.	-----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·제공(<u>배달</u> 을 통한 판매·제공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	1. ----- ----- ----- <u>배달</u> 또는 기내식(機內食)·선식(船食)-----
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